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58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이춘석 · 정준호 · 문진석  
박해철 · 박민규 · 서미화  
이정문 · 이연희 · 윤준병  
한민수 · 박 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형법」에서는 친고죄인 사자의 명예훼손죄 외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사자를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영상 및 콘텐츠가 제작·유포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역사적 위인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자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형법」에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추가하여 사자를 모욕한 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현행법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7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7조(동전)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또는 사자(死者)를 모욕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第227條(同前) 死者의 名譽를 毀損한 犯罪에 對하여는 그 親族 또는 子孫은 告訴할 수 있다.</u></p>	<p><u>제227조(동전)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또는 사자(死者)를 모욕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u></p>